

〈2026년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〉 콘텐츠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안내문

1 사업비 예산편성기준

비목	세목	용도
운영비	일반 수용비	1.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출원 수수료, 저작권 등록, 시험분석 수수료 등
		2. 공고료 및 광고료 - TV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
		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과제 관련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
		4. 인쇄비 및 유인비 - 자료 및 보고서, 각종 양식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
		5. 전문가 활용비 - 외부 전문가 자문료, 원고료,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※ 전문가 인적사항(이름, 주요이력 및 현 소속기관, 직급 등)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내부직원 편성 불가
	일반 용역비	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 ※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불가
	임차료	1. 장소, 물품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.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※ 콘텐츠 관련 전시 및 박람회에 한정 3. AI, 데이터, 클라우드 등 SW 관련 기간제 이용료

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

구분	세부내용
유흥업종	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위생업종	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 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레저업종	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사행업종	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기타업종	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3

사업비 집행, 정산 제출서류

비목	세목		증빙제출서류
운영비	일반 수용비	전문가 활용비	1) 계약서(일일 단가, 횟수 등 기재) 2) 사업(기타)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) 이체확인증 4) 자문확인서(이름, 소속, 직급 등 포함) 5) 결과물(결과보고서, 자문일지 등) 6) 개인정보수집·제공동의서
		그외	1) 견적서, 비교견적서 2) 계약서(수량 및 단가 기재) 3) 전자세금계산서 4) 이체확인증 5) 결과물(결과보고서, 결과물 사진 등)
	일반 용역비		1) 계약서 2) 견적서, 비교견적서 3) 거래명세서(세부품목, 수량, 단가, 금액 등 표시) 4) 전자세금계산서 5)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6) 이체확인증 7) 결과물(용역 결과보고서)
	임차료		1) 계약서(일일 단가, 횟수 등 기재) 2) 견적서, 비교견적서 3) 전자세금계산서(해외 거래한 경우 인보이스) 4)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5) 이체확인증(해외 거래한 경우 외화송금확인서) 6) 결과물(이용 사진, 결과보고서 등)

※ 제출서류로 지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

4

세목별 불인정 기준

구분	내용
공통사항	·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·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·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·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·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·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·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·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

비목	세목	내용
운영비	일반 수용비	· 신문구독료, 세차비, 차량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· 기관운영판공비, 찬조금, 화환구입비 등 ·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·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·세미나 참가비 · 선물(기념품) 구입비(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) ·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논문게재료 등
	일반 용역비	·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비용 · 내부보유 장비·시설·공간에 대한 임차료
	임차료	·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· 수행계획서상의 일반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

※ 이외 정산시 관리기관이 증빙자료 확인 후 불인정 처리 가능

5 유의사항

- 총사업비(지원금) 중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
- 기업 선 집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에 따른 사업비(지원금) 100% 사후지급
-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불인정
- 사업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별도 관리 및 사용(잔액이 0원인 통장 사용 가능, 없을 시 신규 개설)
- 협약기간 내 집행 필수, 기간 외 사용 시 불인정(소급 적용 불가)
 - 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나 가급적 협약기간 내 지출
- 안내된 기준 및 사업담당자와 협의 완료된 내용 외 집행 불가
 - 협약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기재된 내용만 인정하며, 예산 변경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또는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급
 -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, 변경 시 공문을 통해 변경내용 요청 및 협의, 승인 후 진행
- 회계교육 참석 및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함(별도 안내 예정)
- 개인 또는 가족 간 거래 및 현금거래 절대 불가
- 모든 사업비 집행에 따른 내부 결재문서, 증빙서류 제출 필수
- 이외 사항은 사업공고문, 신청서, 협약서 내용을 적용함
- 문의처: 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콘텐츠성장팀 사업담당자(053-215-4906/shine@dip.or.kr)

별첨.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

구 분	대 상	등급/기준	지급금액(원)	비 고
학술 행사비	발표자, 사회자, 토론자	1등급	500,000	
		2등급	400,000	
		3등급	300,000	
강사료	강사	1등급	300,000/시간	
		2등급	200,000/시간	
		3등급	100,000/시간	
	보조강사	-	50,000/시간	
일반 자문비		-	100,000원/시간	1일 최대 3시간, 국외 실소요액
전문 자문비		-	실소요금액	법률, 세무, 회계 등에 관한 자문
원고료	집필자	1등급	40,000원	원고내용, 등급, 사안의 중요성,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%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
		2등급	32,000원	
	디자인료	PPT 기준	50,000원	
교정료	단순교정	국문	2,000원	-
		외국어	4,000원	
	윤문교정	국문	3,000원	
		외국어	6,000원	
통역료	동시통역 (전문통역사)	1등급	1,000,000원	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% 내, 6시간 초과 시 최대 2시간까지 시간당으로 지급(동시통역 15만원 도우미 2만원)
		2등급	800,000원	
		3등급	600,000원	
	외국어도우미	외국유학생	120,000원	
번역료	번역자	외국어⇒한국어	30,000원	1장미만 번역 시 외국어⇒한국어 5만원 한국어⇒외국어 10만원
		한국어⇒외국어(영,일)	60,000원	
		외국어⇒기타외국어	60,000원	
감수료		-	-	필요시 번역료의 20% 반영

※ 학술행사비 및 강사료 등급기준

1등급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

2등급: 대학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

3등급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

※ 원고료 등급기준

1등급: 1. 대학원 및 대학교(전문대학 포함)전임강사 이상

2.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

3. 언론기관, 전문기관,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(집행간부) 및 부장급 이상

4. 위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

2등급: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※ 통역료 등급기준 : 1등급(경력 10년 이상), 2등급(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), 3등급(경력 5년 미만)

※ 원고료 및 교정료의 A4 1매당 기준은 200자 원고지 4장으로 800자 이상이어야 함

※ 번역 결과물이 영어·기타 언어인 경우 A4 1매당 기준은 230단어 이상이어야 함

※ 원고료, 강사료, 통역료,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(내부직원 지급 불가)

※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준용